

## Ⅶ. 독 일

### 1. 예산현황 및 구조

#### 가. 예산의 구조

- 예산은 예산자원(Budgeted Resources : Haushaltsmittel), 운전자금(working Funds : Betriebsmittel), 현금자금(Cash Funds : Kassenmittel)로 구분할 수 있음
  - 예산자원(Budgeted Resources : Haushaltsmittel) : 수입 및 지출, 미래에 지출이 약정된 예산 계정을 포함한 자금. 예산자원은 현금이 아닌 당해 회계연도 과정에 있어 승인된 자금의 이전인 세출예산(appropriation)을 의미
  - 운전자금(working Funds : Betriebsmittel) : 정부로부터 부처로 이전지급된 자금. 동 자금은 당 회계연도의 설정 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되어야 하며 효율적·경제적으로 관리되도록 법정되어있음
  - 현금자금(Cash Funds : Kassenmittel) : 현금보유 및 예비비 계정. 부처는 필요할 경우 독일 중앙은행 계정에서 현금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특별기금의 존재 : 전쟁피해분담기금, 유럽부흥기금, 피해보상기금, 화재기금 등

## 나. 재정규모

<표 VII-1> 독일의 재정규모

(단위 : 10억€)

|      | 2002  | 2002년 1~6월 | 2003(추정) | 2003년 1~6월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재정수입 | 233.8 | 93.0       | 228.9    | 94.6       |
| 세수   | 199.2 | 81.6       | 203.0    | 82.4       |
| 재정지출 | 247.5 | 126.7      | 248.2    | 131.6      |
| 재정수지 | -23.7 | -33.6      | -19.3    | -37.1      |

자료 :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's monthly report, Federal ministry of finance, 2003. 7

## 2. 예산 관련 조직 및 법제

### 가. 예산 관련 조직

#### 재무성

- 재무성의 Department II에서 Federal Budget과 관련된 업무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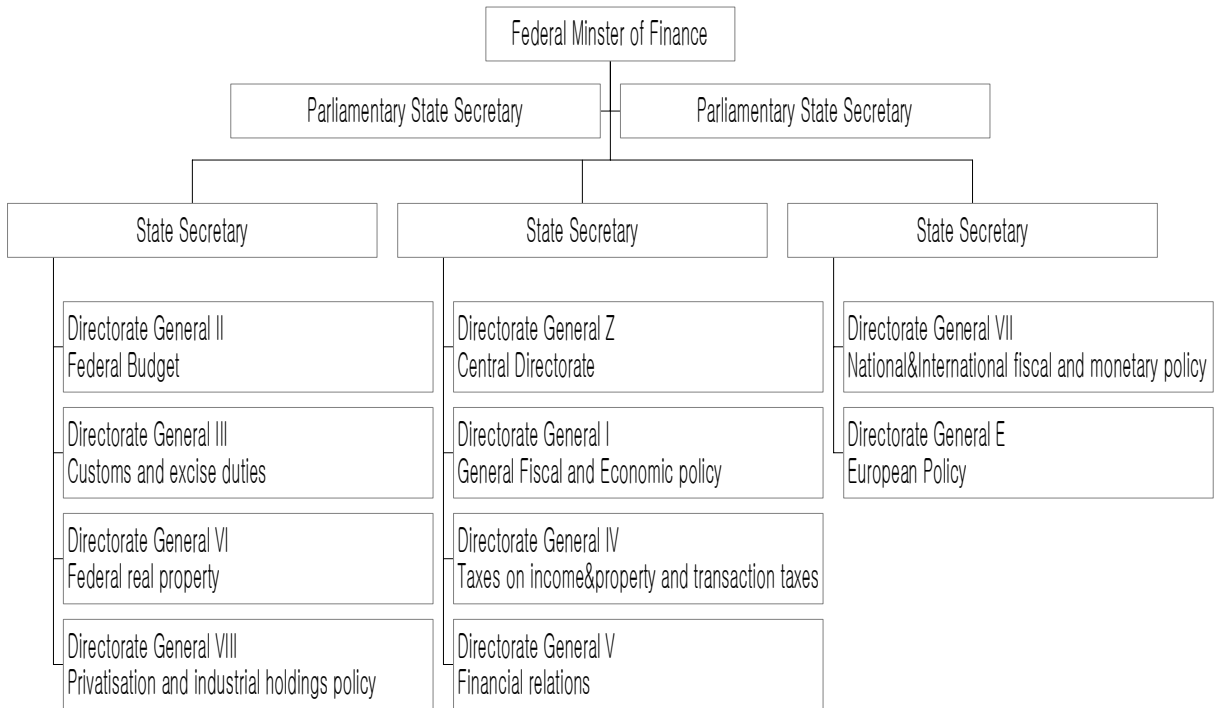
#### 예산법 및 예산체계 전문위원회(Arbeitsausschuss Haushaltsrecht und Haushaltssystematik)

-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법 및 예산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동 위원회에서 규칙적으로 검토·판단, 통일적 집행 목표 마련 이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

#### 세수추계전문위원회(Arbeitskreis Steuerschätzung)

- 연방, 주정부 및 자치단체 연방통계청, 민간경제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명년도 국민경제의 거시예측을 기초로 조세로부터의 재정수입 조달을 추계

[그림 VII-1] 독일 재무부 조직도



## 나. 재정관련 법제 현황

### (1) 연방헌법(GG : Grundgesetz) 109~115 조항

-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예산관리에 있어 능동적, 상호 독립적이다.
- 예산이 적시에 채택되지 않을 경우 중간 예산 관리가 제공된다.
- FMF는 재정적자의 권한을 갖는다.
- 독립적인 감사기구(Federal court of Audit)의 권한 정의
- 정부의 신용조달에 대한 규칙과 제한 정의

### (2)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(StWG : The Law to Promote Economic Stability and Growth)

- 기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반영된 법률
- 1967년, 과거 주정부의 요청에 의해 재정이 조달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 반적인 경제의 수요에 따라 재정이 조달되도록 설계된 근대적 기능으로의 변

화를 고려하기 위해 제정

- 정부의 경제운용 및 재정수단은 시장경제질서에 부응해야 하며, 물가 안정과 고용제고, 무역수지 균형 실현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도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

### (3) (연간)예산법(HG : Haushaltsgesetz)

- 모법인 기본법에 근거, 기본법에 의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연방의회에서 검토·가결한 후 예산으로 성립하며, 효력 발생
- 의회의 승인 이후 비준을 거쳐 법률화된 예산을 뜻함

### (4) 예산기본법(HGrG : Haushaltsgrundsatzgesetz)

-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하여금 원칙이 정한 바와 일치하도록 예산법을 규제
- 1969년 동 StWG에 적합한 재정제도 마련을 위해 예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. 개정안에서는 세입의 단일국고로의 이전 방식을 변경하고, 중장기 재정계획(Finanzplanung) 수립·집행을 요구하였음
- 재무성안에 재정계획운용위원회(Finanzplanungrat) 설치(예산법 제51조)
- 예산기본법의 수정은 상원의 동의를 요구

### (5) Federal Budget Code(BHO)

## 3. 중기재정계획 (Der Finanzplan des Bundes)

### 가. 주요 내용

-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내용 : Der Finanzplan des Bundes - 연방재정계획
  - 연방기본법(GG) 제109조, 경제안정성장촉진법(StWG) 제9조에 근거
  - 1969년 예산개혁 이후 Financial planning의 목적으로 실시됨
  - 경제, 재정운영의 중장기 청사진. 재정운용계획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전망으로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전망
  - 예산안, 특별계정에 관한 예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는 세출세입 총괄표

<표 VII-2> 연방재정계획 2003~2007

(단위 : 10억€)

|                | 예산    | 추정치   | 초안    | 추계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 | 2003  | 2003  | 2004  | 2005  | 2006  | 2007  |
| I. 지출          | 248.2 | 257.0 | 251.2 | 251.2 | 251.2 | 254.9 |
| 전년 대비 변동 (%)   |       |       | -2.3  | -     | -     | +1.5  |
| II. 수입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 1. 세수입         | 203.3 | 196.0 | 201.4 | 211.8 | 221.4 | 229.9 |
| 2. 세외수입        | 26.0  | 26.0  | 18.9  | 18.4  | 14.8  | 15.0  |
| - 연방은행/EZB 이윤  | 3.5   | 26.0  | 3.5   | 3.5   | 3.5   | 3.5   |
| - 사유화          | 7.6   |       | 0.1   | 0.1   | 0.1   | 0.1   |
| - Muzeinnahmen | 0.7   |       | 0.5   | 0.6   | 0.6   | 0.5   |
| III. 순 부채 증가   | 18.9  | 35.0  | 30.8  | 21.0  | 15.0  | 10.0  |
| 참고 : 정부투자지출    | 26.7* | 26.7* | 24.8  | 24.7  | 24.7  | 24.7  |

자료 : Der Finanzplan des Bundes 2003~2007, Bundesfinanzministerium, 2003  
<http://www.bundesfinanzministerium.de>

주 : 수해지원 예산 제외 : 241억€

- 독일의 중기재정계획은 '계획'보다는 '전망'
  -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80%
  - 연방예산이 불필요하게 팽창하는 것, 즉 초과지출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
  - 중기재정계획의 기능별 지출계획은 의회의 심의, 의결대상이 아니며, 그 내용 역시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의 성격을 가짐
  - 지출부서별 세분화된 계획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지출부서와 재무부 사이에서만 공유됨
  
- 계획 기간 : 5년
  - 현재 회계연도(ex:2004년)
  - 다음 회계연도 제출할 예산(ex:2005년)
  - 실질적인 계획으로서의 추후 3개연도(ex:2006~2008)  
 (= 당해연도 + 다음해 예산안 + 그 후 3년간의 계획)
  
- 포괄 범위 : 연방정부(연방자산)의 세출, 세입
- 표시 형식 : 세출(지출목적별, 부처별), 세입(세목별 세수전망)

□ 분류 방식

- 세입과 세출총액뿐만 아니라 분야별 지출계획까지 작성
- 고정계획과 변동계획으로 나뉘는데, 고정계획은 변동성이 적은 지출이 해당되며, 변동계획은 경제의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동되는 지출을 의미

나. 작성 주체 : 재무성

- 중기재정계획위원회(Financial Planning Council) : 재무성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16명의 주정부 재무장관, 자치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
- 국공채발행위원회(Committee on Public Borrowing) : 각 정부단위 공채발행의 경우 국공채발행법에 입각한 공채발행을 하도록 감시·초과발행 억제

다. 계획의 구속력

- 후년도 예산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, Zero base에서 출발
-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으며 정부의 내부적 결정사항일 뿐임
  - 중기재정계획의 당초 도입은 시범사업 형식을 띤 것으로 단년도 예산에 비해 구속력이 작았으나 모라토리엄 기간 이후 일정한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

라. 중기재정계획의 구성

- ① 개요(중점 항목)
- ② 예산 및 재정계획기준치(세출, 세입, 순채무조달 등의 총괄표)
- ③ 세출(분야별, 경제성질별의 세출 견적 및 설명)
- ④ 세입(세수, 기타 수입의 견적 및 설명)
- ⑤ 기타 공공 부문과의 재정관계(지방, EU, 기타 국제기관)
- ⑥ 재정계획 기간 이후의 연방예산전망(이자지불, 연금급부, 채무부담 등)
- ⑦ 재정계획 기간의 거시경제전망 및 예측(중기재정계획 책정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)

마. 계획의 공포

- 중기재정계획은 연방 재무부에 의해 작성되고, 최종적으로는 세출에 있어서 전체 항목(약 8,000항목)에 대해 내각의 결정이 이루어짐

-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내용만 발표되고, 항목별 세부내역은 공표되지 않음
- 세출은 분야별(2002~06 중기재정계획의 경우 사회보장5), 국방, 소비자보호·식료·농업, 경제진흥 등의 11개 항목으로 구성)로 구분됨

<표 VII-3> 독일정부 경제전망 및 예산편성 절차

| 월  | 경제전체 전망      | 세수전망    | 재정조정     | 연방정부 예산 및 재정계획       | EU의 예산일정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연방정부 연례 경제보고 |         |          | 부처별 예산안 준비           | 국가별 안정화 프로그램 논의     |
| 3  | 연방/지방 공동경제전망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경제안정 및 성장 조약의 기준 통보 |
| 4  | 거시경제 전망(중기)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EU 이사회의 연초전망        |
| 5  |              | 중기 세수전망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             |         | 재정계획 위원회 | 내각 결정<br>- 예산안, 재정계획 | 경제정책 개요 발표          |
| 9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연방 하원 1차 독회          | 경제안정 및 성장 조약의 기준 통보 |
| 10 | 거시경제 전망(단기)  |         |          | 연방 상원 1차 독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전문가 회의       | 단기 세수전망 | 재정계획 위원회 | 연방 하원 2, 3차 독회       | EU 이사회의 추계전망        |
| 12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연방 상원 2차 독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주 : 독일의 전통적 특징으로 중기재정계획 작성시 연방 재무부 장관과 각 부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상은 연방 재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함

5) 이 중 사회보장 항목은 노동시장, 가족정책, 전쟁희생자 보상 등을 중심으로 9개로 세분됨

#### 4. 예산 일정

<표 VII-4> 2001년 예산 일정

| 일 정 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|--|
| 1999년 12월 | 각 연방당국에 예산(2001) 및 재정계획(2000-2004)의 준비를 위한 회람(Circular) 송부<br>- 예산상황에 대한 평가<br>- 예산안 제출 요청(3월 초)<br>- 예산작성의 지침 |
| 2000년 3월  | 예산안을 부처별로 작성하여 재무성(FMF) 제출<br>재무성과 부처 간 예산안의 조정(기술적 수준)  |
| 5월        | 중기재정계획 및 세입전망  |
| 6월        | 실무자 수준에서 예산안 조정<br>내각 전체회의에서 정부예산안 상정 및 최종의결   |
| 8월        | 상, 하원에 정부 예산안 제출, 의회의 예산안 심의   |
| 9~10월     | 1st reading in BT(하원)<br>1st debate in BR(상원)<br>예산위원회의 심의 시작  |
| 11월       | 차년도 경기전망 및 세입전망<br>예산위원회의 최종 심의<br>2nd, 3rd reading in BT  |
| 12월       | 2nd debate in BR(상원)<br>예산안 최종 심의, 공포  |
| 2001년 1월  | 예산안의 실행  |

주 : 회계연도 1월 1일~12월 31일

##### 가. 행정부<sup>6)</sup>

- 재무성의 수입·지출을 포함한 재정계획의 재평가 및 수정
- 연방 각성의 장관은 경비지출 예산을 편성, 재무성에 제출

6) 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“예산편성 방식”을 참조

- 세수추계위원회(Arbeitskreis Steuerschätzung)에서 조세수입 추계
- 연방의 각성이 요구하는 예산지출에 대한 재무성의 검토 및 조정
- 새해예산안에 대한 연방정부 비준

## 나. 의회

- 연방 상·하원에 정부예산안 동시 제출(기본법 제110조 제3항)
  - 재무장관이 하원의 9월 회기, 늦어도 1주 전에 제출
  - 예산안, 5년간의 세입·세출에 관한 재정계획, 재정보고서, 2년 주기의 보조금 보고서 제출
  
- 연방 상원 제1독회 : 1st stage in the Bundesrat
  - 연방 상원은 예산안을 제출 받은 6주 이내에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
  - 연방 상원의 의견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이 지체 없이 하원의 의장에게 전달
  - 이 경우 연방 상원에는 주정부 대표가 참여하여 주정부의 예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
  
- 연방 하원 제1독회 : 1st debate(reading) in the Bundestag
  - 연방 상원과 동시에 연방하원에서 1st. debate(reading) 개최
  - 재무장관이 9월 정식 회기중 예산연설(Budget Speech) 실시
    -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정책과 정부의 기초예산에 대한 연설
  - 이에 대해 하원의원들은 소속된 정당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
  
- 하원 예산위원회(Hanshaltsausschuss)의 예산심의
  - 예산위원회는 다수의 부문별 분과 위원회에 의해 세부적인 검토 심의를 수행, 부적절하다고 판명된 예산은 삭감·변동
  - 중요성이 높거나 위원회 멤버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논의 없이 즉시 수용
  - 수정예산은 예산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어 수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하게 됨

- 연방 하원 제2독회 : 2nd reading in Bundestag
  - 예산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기보다 연방 상원이 내놓은 의견 절충 과정
  - 예산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하원에 제시되며 연방정부의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최초 논의 시작
  - 연방 하원은 각 부처별 예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결정
  
- 연방 하원 제3독회 : 3rd reading in Bundestag
  - 부처별 예산수정안 검토·심의, 수정안에 대한 표결
  - 하원에서 표결을 통해 승인된 예산안이 2차 심의의 과정으로 상원에 회부
  
- 연방 상원 제2독회 : 2nd reading in Bundesrat
  - 하원이 제시한 예산을 상원이 거부할 경우 3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회부<sup>7)</sup>하여야 하며 연방하원은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 실시
  - 예산 법제화는 상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 상원은 2주 이내의 반대 입장 표명만 가능, 반면 하원은 다수결에 의해 수정된 예산안을 거부 가능
  - 연방 재무성 장관, 연방정부 수상의 서명, 연방정부 대통령의 비준 후 최종적으로 관보(Federal Law Gazette)에 공표되어 법률적 효력 발생

## 5. 예산편성 방식

### 가. 재정정책의 원칙

- “1”회계연도 “1”예산안 원칙 : 1월 1일~ 12월 31일을 한 해의 회계연도로 설정하고 있으며 단년도 예산편성이 원칙
  
- 단일예산제도 : 연방의 특수사업과 관련한 특별기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은 단일예산 내에서 처리
  
- 포괄성 원칙 : 모든 재정수입과 경비지출은 예산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

---

7) 기본법 제77조

- 총계주의 : 모든 재정수입과 경비지출은 모두 예산 조단위로 계상하여 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편성하며 차입이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예외를 인정
- 재원조달의 총체성 : 모든 정부수입은 정부지출수요 충족을 위해 조달되어야 하며,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은 연계되지 않음
- 균형예산 : 예산은 정부수입(차입 포함)으로 예산에 계상된 정부지출액을 충당시켜 줌으로써 항시 수입의 크기와 지출의 크기를 일치시켜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함
- 사전성의 원칙 : 예산편성, 심의, 확정 등의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헌법기관은 예산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님

#### 나. 지출총액과 분야별 지출 상한

- 결정 과정
  - 각 연방장관은 지출수요를 제안형식으로 재무성에 제출하며, 이때 연방의 각성은 연방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사업내용에 관한 경비지출요청을 할 수 있음.
  - 예산지침 대신에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추진되는 연방정부의 정책목표를 참고하여 경비지출을 요구
  - 거시경제 예측을 기초한 세수추계위원회의 세수추계 작성
    - 구성 : 연방, 주정부, 자치단체, 연방통계청, 경제연구소 등
  - 연방재무성에 의한 각 연방의 예산지출 검사 및 조정
    - 변경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각 성과 협의, 조정
    - 총지출예산은 차입을 포함 총재정수입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재무성은 중기재정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
    -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최선의 배려를 집중해야 하며 지출재원의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지출규모를 감소하는 조정 실시
  - 연방정부의 예산안 채택

<표 VII-5> 중기재정배분계획 : 분야별 총액

(단위 : 백만€)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2   | 2003   | 2004   | 2005   | 2006   | 2007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<b>A. 사회보장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2,868 | 77,269 | 76,282 | 77,970 | 78,745 | 79,926 |
| - 노동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,653 | 12,556 | 19,614 | 15,766 | 12,596 | 12,855 |
| - 가족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740  | 3,736  | 3,436  | 3,220  | 3,195  | 3,179  |
| - 주거보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259  | 2,650  | 2,650  | 2,625  | 2,625  | 2,575  |
| - 주택건설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2    | 500    | 500    | 500    | 500    | 500    |
| - 전쟁피해자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848  | 3,648  | 3,395  | 3,095  | 2,900  | 2,695  |
| - 분단관련 보상, 부담지원                      | 583    | 592    | 571    | 548    | 518    | 488    |
| - 농업자 사회정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,071  | 4,074  | 3,819  | 3,873  | 3,941  | 4,035 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866  | 2,757  | 3,769  | 4,206  | 4,891  | 4,658  |
| <b>B. 국방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군사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,509 | 24,379 | 24,249 | 24,249 | 24,249 | 25,200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8    | 131    | 126    | 125    | 124    | 124    |
| <b>C. 소비자보호, 식량, 농업</b>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농업구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5    | 765    | 735    | 735    | 730    | 730   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10    | 538    | 473    | 469    | 450    | 439    |
| <b>D. 경제지원</b>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159  | 2,925  | 2,471  | 2,426  | 2,142  | 1,855  |
| - 기타 부문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588    | 575    | 536    | 535    | 478    | 426    |
| - 중소기업, 연구,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| 836    | 870    | 810    | 794    | 785    | 776    |
| - 지역경제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13  | 4,479  | 1,008  | 933    | 861    | 732   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59  | 2,167  | 2,182  | 2,078  | 2,069  | 1,969  |
| <b>E. 교통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연방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,077 | 10,595 | 10,189 | 10,151 | 10,236 | 10,088 |
| - 연방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631  | 5,458  | 5,787  | 5,756  | 5,798  | 5,941  |
| - 수운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549  | 1,548  | 1,508  | 1,514  | 1,493  | 1,517  |
| - 교통상태의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702  | 1,677  | 1,677  | 1,677  | 1,677  | 1,677  |
| - 지역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67    | 1,159  | 1,503  | 1,550  | 1,606  | 1,606  |
| - 주택 및 도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154  | 1,847  | 1,975  | 2,125  | 1,969  | 1,840  |
| - 의회 및 정부이전                          | 521    | 403    | 321    | 168    | 118    | 77     |
| <b>F. 연구, 교육, 과학, 문화</b>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대학외 과학, 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     | 6,442  | 6,574  | 6,618  | 6,743  | 6,785  | 7,023  |
| - 대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07  | 1,425  | 1,121  | 1,092  | 1,038  | 856    |
| - 교육지원, 후속 연구자 지원                    | 1,187  | 1,189  | 1,240  | 1,239  | 1,243  | 1,246  |
| - 직업교육, 기타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 471    | 737    | 1,495  | 1,476  | 1,449  | 1,129  |
| - 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499  | 1,423  | 1,437  | 1,461  | 1,458  | 1,458  |
| <b>G. 환경, 보건, 체육</b>                 | 687    | 627    | 595    | 596    | 593    | 576    |
| <b>H. 내무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3,136  | 3,362  | 3,434  | 3,458  | 3,448  | 3,434  |
| <b>I. 대외경제협력, 개발</b>                 | 3,672  | 3,695  | 3,737  | 3,790  | 3,937  | 4,038  |
| <b>J. 일반재정계정</b>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- 이자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,110 | 37,940 | 37,935 | 41,198 | 42,087 | 43,921 |
| - supply line(versorgungsleistungen) | 13,808 | 14,124 | 13,948 | 15,122 | 15,471 | 15,907 |
| - 특별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462  | 2,268  | 2,255  | 238    | 351    | 554    |
| - 신탁청 후속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59    | 449    | 424    | 445    | 359    | 312    |
| -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,638  | 7,782  | 8,045  | 7,997  | 8,027  | 7,965  |
| - 전체 수지 (-)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 -695   | -669   | -745   | 259    | 5      |

자료 : Der Finanzplan des Bundes 2003-2007, Bundesfinanzministerium, 2003

## 6. 집행 제도

### □ 예산의 집행

- 예산집행에 있어 연방정부 및 그 하부 행정기구들은 다음의 행정집행 원칙들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함

### □ 행정집행 원칙

- 경비지출은 당 회계연도 예산에 설정된 목적에 부합할 때 발생·집행될 수 있음. 따라서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비용을 다른 목적을 위해 지출할 수 없음
- 경비지출로 배정된 자금은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관리·집행해야 함
- 회계연도 내에 정규적인 예산집행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동으로 인한 예외적인 예산집행(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의 예외적인 예산집행)의 경우 연방예산법 및 경제안정성장 촉진법에 입각하여 실행
- 사안이 긴급하여 예산초과지출에 의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이용
- 연도개시까지 예산이 미확정인 경우 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달, 봉급, 법률에서 정한 조치에 필요한 지출이 발생
- 예산초과지출은 재무성 장관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며 의회 보고
- 세입결손 등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무성 장관이 부처별 절감액을 할당하여 각 부처에 통보, 구체적인 사업별 절감은 각 부처장의 책임하에 결정

<표 VII-6> 2004 연방예산 및 2003~2007 재정계획 - 세입

(단위 : 백만€)

| 개별예산  | 2003       | 2004       | 2005       | 2006       | 2007      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01 Bundespräsident und Bundespräsidialamt                 | 0.03       | 0.03       | 0.03       | 0.03       | 0.03       |
| 02 Deutscher Bundes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81       | 1.79       | 1.77       | 1.75       | 1.78       |
| 03 Bundesrat  | 0.02       | 0.01       | 0.01       | 0.01       | 0.01       |
| 04 Bundeskanzler und Bundeskanzleramt                     | 2.57       | 2.61       | 2.61       | 2.61       | 2.61       |
| 05 Auswärtiges Amt  | 121.08     | 143.9      | 119.11     | 117.6      | 117.6      |
| 06 BM des Innern  | 374.13     | 387.01     | 402.03     | 417.08     | 417.9      |
| 07 BM der Justiz  | 300.82     | 312.07     | 314.57     | 314.58     | 314.59     |
| 08 BM der Finanzen  | 1,188.13   | 1,107.47   | 1,094.78   | 1,153.79   | 1,170.95   |
| 09 BM für Wirtschaft und Arbeit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4.3      | 307.63     | 290.21     | 290.11     | 290.09     |
| 10 BM für Verbraucherschutz,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| 172.2      | 233.31     | 145.88     | 141.78     | 138.02     |
| 12 BM für Verkehr, Bau- und Wohnungswesen                 | 2,804.94   | 4,329.44   | 4,356.63   | 4,381.82   | 4,402.52   |
| 14 BM der Verteidig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.79     | 286.69     | 286.69     | 286.69     | 192.69     |
| 15 B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               | 1,959.78   | 2,057.80   | 2,170.68   | 2,285.57   | 2,407.57   |
| 16 BM für Umwelt,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     | 86.52      | 79.45      | 76.57      | 74.42      | 70.89      |
| 17 BM für Familie, Senioren, Frauen und Jugend            | 65.21      | 62.68      | 62.68      | 62.67      | 62.67      |
| 19 Bundesverfassungsgerich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       | 0.05       | 0.05       | 0.05       | 0.05       |
| 20 Bundesrechnungsh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37       | 0.36       | 0.36       | 0.36       | 0.36       |
| 23 B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| 718.42     | 709.45     | 692.45     | 686.3      | 630.68     |
| 30 B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82.63     | 350.29     | 313.19     | 247.89     | 187.09     |
| 32 Bundesschuld   | 22,595.85  | 34,840.68  | 24,989.27  | 18,693.71  | 13,817.42  |
| 33 Versorgung   | 830.8      | 856.66     | 892.29     | 930.03     | 969.82     |
| 60 Allgemeine Finanzverwalt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5,738.58 | 205,130.67 | 214,988.17 | 221,111.17 | 229,704.68 |
| 총계  | 248,199.00 | 251,200.00 | 251,200.00 | 251,200.00 | 254,900.00 |

<표 VII-7> 2004 연방예산 및 2003~2007 재정계획 - 지출

(단위 : 백만€)

| 개별예산  | 2003       | 2004       | 2005       | 2006       | 2007       |
|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01 Bundespräsident und Bundespräsidialamt                 | 20.47      | 22.96      | 23.15      | 21.52      | 21.44      |
| 02 Deutscher Bundes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40.73     | 548.93     | 548.74     | 549.86     | 525.52     |
| 03 Bundesrat  | 17.06      | 17.80      | 19.41      | 19.67      | 19.72      |
| 04 Bundeskanzler und Bundeskanzleramt                     | 1,483.56   | 1,488.06   | 1,488.60   | 1,469.00   | 1,474.12   |
| 05 Auswärtiges Amt  | 2,229.91   | 2,183.40   | 2,161.91   | 2,148.39   | 2,148.29   |
| 06 BM des Innern  | 4,014.00   | 4,092.58   | 4,035.01   | 4,083.71   | 4,023.03   |
| 07 BM der Justiz  | 345.35     | 344.27     | 339.60     | 340.08     | 339.87     |
| 08 BM der Finanzen  | 3,286.62   | 3,338.03   | 3,431.25   | 3,386.36   | 3,356.88   |
| 09 BM für Wirtschaft und Arbeit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8,508.19  | 25,003.35  | 20,777.44  | 17,259.69  | 17,136.81  |
| 10 BM für Verbraucherschutz,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| 5,627.19   | 5,209.10   | 5,295.84   | 5,354.62   | 5,454.94   |
| 12 BM für Verkehr, Bau- und Wohnungswesen                 | 26,069.10  | 26,491.84  | 26,450.15  | 26,291.79  | 26,090.65  |
| 14 BM der Verteidig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,378.78  | 24,248.81  | 24,248.81  | 24,248.81  | 25,200.00  |
| 15 BM fü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                | 82,033.31  | 81,882.49  | 83,763.27  | 85,043.41  | 85,818.19  |
| 16 BM für Umwelt,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     | 794.02     | 791.41     | 786.91     | 772.74     | 767.63     |
| 17 BM für Familie, Senioren, Frauen und Jugend            | 5,101.39   | 4,746.13   | 4,474.23   | 4,448.27   | 4,431.36   |
| 19 Bundesverfassungsgerich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.21      | 17.27      | 17.15      | 17.35      | 17.31      |
| 20 Bundesrechnungsho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5.23      | 90.26      | 92.78      | 90.96      | 90.93      |
| 23 B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 | 3,767.54   | 3,800.00   | 3,843.00   | 3,983.00   | 4,084.00   |
| 30 BM für Bildung und Forsch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364.22   | 8,209.19   | 8,262.12   | 8,305.16   | 8,348.16   |
| 32 Bundesschuld   | 39,940.15  | 39,935.24  | 43,097.71  | 43,986.74  | 45,721.25  |
| 33 Versorgung   | 8,806.02   | 8,981.01   | 9,156.10   | 9,355.91   | 9,592.55   |
| 60 Allgemeine Finanzverwaltu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779.98  | 9,757.86   | 8,886.83   | 10,022.97  | 10,237.34  |
| 총계  | 248,199.00 | 251,200.00 | 251,200.00 | 251,200.00 | 254,900.00 |

자료 : Der Finanzplan des Bundes 2003-2007, Bundesfinanzministerium, 2003